

#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23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1. 26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1. 28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2. 1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사유

-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 및  
규제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보관관리의 책임 변경 (안 제4조)  
나. 대부절차 변경 (안 제5조)  
다. 양도금지 삭제 (안 제8조)  
라. 관리 및 감독 삭제 (안 제9조)  
마. 반환 및 변상 변경 (안 제12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인한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과  
행정규제기본법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한  
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 
사항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# 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### 6. 토 론 : 없음

### 7. 심사결과 :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